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01월 13일 이명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여비의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나. 여비 수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공무원 여비의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여비 수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해 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